

2025년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재공고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5년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대표 플랜트 구축 및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동종업계 자발적 전환 유도
- (공급망 탄소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의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 (지원유형) ①컨소시엄형(원청기업+협력기업), ②개별기업형(지원기업 단독)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할 및 의무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업공고 등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 지원기업 공모, 사업계획 적정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기업 진도·성과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검증 - 사업 성과홍보·확산 지원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컨소 시엄	원청기업 (대·중견기업)	- 컨소시엄 참여 협력기업 발굴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컨소시엄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구 분		역할 및 의무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 운영계획 자문 - 협력기업의 사업 진도관리 - 공급망 감축의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및 검증 관리 - 협력기업 탄소감축을 위한 중장기 지원방안 수립 ※ ① 컨소시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요 ② 개별기업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필요
	협력기업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운영 - 선도플랜트 구축·운영 결과 보고 - 전시회 참가, 오픈랩 운영 등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확산

2. 사업 내용

□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 (발굴 및 선정) 지원기업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감축효과 및 선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선정

- (플랜트 구축)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기업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 ①에너지효율, ②연원료전환, ③순환경제, ④혼합형(①~③의 혼합)

- (설비보급·개선)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교체, 재생 에너지 생산, 폐열, 용수,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개선 지원
- (공정개선, 신·증설) 연·원료대체, 공정배출 감축, 생산설비 자동화,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신·증설의 경우 인·허가, 토지매입 등은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급망 상생협력) 제품생산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급망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파트너십 협력('컨소시엄형'에 한함)
- 직렬형, 병렬형, 혼합형 공급망 구조 형태**에 따라 선택적 모델 구현

*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이 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한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성하여 지원

** 직렬형: 원청기업 부터 1차, 2차, n차 협력기업 각 한 개 기업씩 공급체계에 맞춰 구성

병렬형: 원청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여러 개의 1차 협력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혼합형: 원청기업부터 n차 협력기업까지 직렬형과 병렬형을 혼합하여 컨소시엄 구성

□ 성과확산 지원

-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업계 중심으로 선도플랜트 성과 확산을 통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 (사업장 방문) 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 (기술교류회) 대표사업장의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 공급기업 기술 홍보, 탄소중립 이행전략 공유 등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예시>

지원유형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예시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에너지절감 모니터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연료/원료 전환	연·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신재생 에너지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재제조	·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회수	·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 컨소시엄형

※ ① 컨소시엄형은 개별기업의 지원은 불가하므로, 원청기업(대·중견기업)과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간 충분한 협의 후 지원 필수

- (지원대상) 탄소 다배출 업종 원청기업(대·중견기업)과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컨소시엄 중 수출기업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 원청기업(대·중견기업)의 자회사(중소기업)와 관계기업(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군 등)은 제외, 원청기업(대·중견기업)의 공급망상에 포함된 협력기업만 가능

- 원청기업이 다수의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다만, 협력기업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컨소시엄 내 협력기업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원청 또는 협력) 및 중소기업(협력)에만 지원됨

** 원청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해 현물·현금 출자 의무는 없으나, 협력기업에 대해 현물·현금 출자시 원청기업 참여도 평가항목에서 유리

② 개별기업형

- (지원대상)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탄소 감축량이 큰 기업 우대)

< ①, ② 지원 유형 공통사항 >

-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중심)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지원규모

※ 평가결과에 따라 컨소시엄형과 개별기업형이 모두 선정되거나, 1개 유형만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유형에 따른 우대사항은 없음

- (지원예산)

① 컨소시엄형: 컨소시엄당 1년 최대 20억원

② 개별기업형: 개별기업당 1년 최대 15억원

- (국고보조율) 협력기업/개별기업 총 사업비의 최대 40%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액 차등

□ 지원범위

- (지원 범위)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비용에 한함

※ (공통 유의사항)

- '25년 1차 공고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도 협력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차 신청 가능
- 컨설팅비용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전시회 참가비용 등 성과홍보를 위한 운영비는 지원 가능
- 전력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 사업장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설비 활용목적에 경제활동 등 수익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발전 설비 도입 후 잉여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구간별 정산수수료 >

총사업비 구간	정산수수료(원)
10억 미만	1,200,000
10억 이상 20억 미만	1,500,000
20억 이상 30억 미만	1,800,000
30억 이상 40억 미만	2,000,000
40억 이상	2,500,000

* 부가세 별도

※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지원기업 자기부담**

* 지원기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구매 및 공사 계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므로, 나라장터 공고를 사전에 준비할 것

□ 사후 성과관리

-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4단계 평가) ①사전검토 → ②서면평가 → ③현장조사 → ④발표평가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① 사전검토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 사업목적의 부합성 검토 - 기업 제출서류의 신뢰성 검증
②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합리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선도효과 등 평가하여 현장조사 대상 선발
③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와의 비교·대조 및 일치여부 확인 -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④ 발표평가**		- 컨소시엄 운영계획,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기업 최종 선정 - 가점 대상 여부 검토

* 서면평가지 제출하는 운영계획서(원청기업), 사업계획서(협력기업)내 배출량 산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인증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함

** 발표평가지, 평가 기준에 맞춰 원청기업 실무 담당자, 협력기업 사업 책임자 발표 필수
(개별기업형의 경우, 지원기업의 사업책임자 발표)

□ 평가 기준

○ 사업지원 대상 평가항목

- ◇ 사업의 타당성(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 ◇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 효과
- ◇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동종업계 타사업장의 확산 계획의 적합성)
- ◇ 지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성

○ 우대요건

- ◇ 원청기업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 규모 등('컨소시엄형'에 한함)
- ◇ 주 생산품 기준 동사업 지원대상 업종 중 현재 미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기지원 업종 : 기계,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 철강, 자동차, 전자
- ◇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기업
- ◇ 4대 구축유형 중 '에너지효율 개선' 이외 3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기간(1년간) 동안 총사업비 기준 3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한 기업

○ 사업지원 대상 제외 조건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 ~ 5월 19일 18:00 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① 컨소시엄형

- 원청기업 : 사업신청서(사업참여의사 확인서, 컨소시엄 운영계획서) 및 첨부 서류
- 협력기업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② 개별기업형 : 컨소시엄형의 협력기업과 동일

□ 신청 방법

- ① 컨소시엄형 : 원청기업에서 협력기업의 서류 일체 모두 취합하여 제출
- ② 개별기업형 : 지원기업에서 직접 제출
- 이메일 제출 : netzeroplant@kncpc.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 이메일 문의 : netzeroplant@kncpc.re.kr
 - 전화 문의 : 유미진 연구원(02-2183-1517), 김기은 선임연구원(02-2183-1519)

6.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진 내용	일 정
① 공고 및 접수	○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 신청 접수	4.21일 ~5.19일
② 사전 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참여제한 여부 등 운영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서면평가 대상 선정	5월 4주
③ 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평가	5월 4주
④ 현장 조사	○ 사업계획서 비교·대조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 확정	5월 5주 ~6월 1주
⑤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발표평가	6월 2주
⑦ 지원기업 확정	○ 당해연도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6월 2주
⑧ 협약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 6월
⑨ 사업 착수	○ 지원기업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착수	7월
⑩ 중간 점검	○ 지원기업 현장방문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9~10월
⑪ 성과 검증	○ 구축완료기업('23~'24년 지원 4개사) 대상 현장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검증	10~11월
⑫ 최종(연차) 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성과 점검	12월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